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27
----------	------

제출일자 : 2023. 6.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민선8기 공약·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
인력운영 방침인 인력재배치를 통한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과 단위 개정사항 : 안 제8조
 - 공공시설과 : 신설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4조, 제8조, 제9조
 - 정책추진단 : 변경(정책사업 → 정책사업1, 청년혁신 → 정책사업2,
S자형관광벨트 → 정책사업3), 폐지(전략시설)
 - 건축과 : 폐지(공공시설)
 - 공공시설과 : 신설(공공시설1, 공공시설2, 기전)
 - 관광과 : 통합(관광개발+관광시설 → 관광개발)
신설(교도소후적지개발TF → 교도소후적지개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3. 5. 23. ~ 6. 2.)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 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정책사업·S자형관광벨트·청년혁신·전략시설”을 “정책사업1·정책사업2·정책사업3”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건축과·토지정보과”를 “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건축과·공공시설과·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7호 중 “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건축물관리”를 “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건축물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시설1·공공시설2·기전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관광시설”을 “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교도소후적지개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실·과·소장과 담당”을 “실·단·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제3호 및 제4조제5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다목 중 “국장·소장·실장”을 “국장·소장·실장·단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

-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 실·단·과·소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를 “실·단·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국장 및 실·과·소장”을 “국·소장 및 실·단·과장”으로 한다.

-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④ <u>정책추진단장은 정책사업·S자형관광벨트·청년혁신·전략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u></p> <p>제8조(건설도시국) ① <u>건설도시국에 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건축과·토지정보과를 둔다.</u></p> <p>② <u>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p> <p>7. <u>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u> (신설)</p> <p>8. <u>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주소정보에 관한 사항</u></p> <p>제9조(문화관광국)② <u>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p> <p>3. <u>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관광시설에 관한 사항</u></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④ ----- <u>정책사업1·정책사업2·정책사업3에</u> -----.</p> <p>제8조(건설도시국) ① ----- <u>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건축과·공공시설과·토지정보과를</u> -----.</p> <p>② (현행과 같음)</p> <p>7. <u>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건축물관리</u>-----</p> <p>8. <u>공공시설1·공공시설2·기전에 관한 사항</u></p> <p>9. (현행 8과 같음.)</p> <p>제9조(문화관광국)② (현행과 같음)</p> <p>3. <u>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교도소 후적지개발에 관한 사항</u></p>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사업개요

민선8기 공약·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 인력 운영 방침인 인력재배치를 통한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2. 비용 발생 요인

공무원 증원 6명(일반임기제 1명 포함)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연도별 비용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3,011,265천 원 정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3,011,265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채용조달방안 :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 입	558,188	579,399	601,416	624,270	647,992	3,011,265
지 방 세	558,188	579,399	601,416	624,270	647,992	3,011,265
의존재원						
세 출	558,188	579,399	601,416	624,270	647,992	3,011,265
인 건 비	558,188	579,399	601,416	624,270	647,992	3,011,265
재원 조달	558,188	579,399	601,416	624,270	647,992	3,011,26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균 비	558,188	579,399	601,416	624,270	647,992	3,011,265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